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22누1222 지방세 감면 및 기납부 세액 경정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구합369 판결
변론종결	2023. 6. 28.
판결선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별지 기재와 같이 감면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9. 2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조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작성자는 B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적법하다. ○○시는 B와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만큼,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1)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이 재량행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처분을 이행하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가 B와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작성자는 B이고, ○○시는 B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으므로, ○○시가 이 사건 개발사업자의 공동 사업시행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 혜택이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1], 피고가 신뢰

1)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과 달리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합549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713]에서는 위 부분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1다262905)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이 법원 2023나830호로 계속 중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9

별지

1. ◯◯시 C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 취득세 및 재산세
2. 위 1.항 기재 각 취득세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33. 3. 21.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3. 위 1.항 기재 각 재산세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23. 3. 21.까지는 전액을 면제하고, 2023. 3. 22.부터 2026. 3. 21.까지는 50%를 감경한다. 끝.